자엔고택.
운정신협.

청렴IN 청렴人

영 등 포 구

수신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귀하

(경유)

제목 **2026년 건축이행강제금 반복부과(정기분) 부과예고 통지**

1. 귀하(사)께서 소유(사용)중인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로서 동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자진시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2026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부과예고)하오니,**
2. 본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6. 8. 18.(화)까지 첨부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주택과 주택정비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건축물 현황**

위 치	건축주	소유지분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	부과예정금액 (원)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61-1 601호(우)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1	주거, 601호 베란다(우)	판넬/판넬	3	184,200	김윤모	02-2670-3683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접수 No. 2026.08.10 우리자산신탁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수신자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7">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6">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7">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 축조</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7">무허가 건축물 축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예정 금액: 184,200 원)</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7">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영등포구청</td><td>부서명</td><td>주택과</td><td>담당자</td><td>김윤모</td></tr>
<tr><td>주소</td><td colspan="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td><td>전화번호</td><td>02-2670-3683</td></tr>
<tr><td>전자우편 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02)2670-3614</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4">2026년 8월 18일(화)까지</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영 등 포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5층 주택과

영등포구청 주택과

07260

반 송
불 요

1101912358923

[접수국 : 서울영등포]
2026년 08월 05일 제작

A1 135 09 16
동서울 서울강남

보통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귀하
06152

우정사업본부 e-그린우편
ePOST.kr 우체국 콜센터 : 1588-1300

내용문과 주소록을 파일로 신청하면 우편물제작과 배달을 한번에 O.K!
봉투식, 메일머지(청구서, 지로), DM동봉, 특수취급우편 등의 편리한
우편 제작 서비스입니다.

청렴IN 청렴人

영 등 포 구

수신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귀하

(경유)

제목 **2026년 건축이행강제금 반복부과(정기분) 부과예고 통지**

1. 귀하(사)께서 소유(사용)중인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로서 동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자진시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2026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부과예고)하오니,**
2. 본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6. 8. 18.(화)까지 첨부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주택과 주택정비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건축물 현황**

위 치	건축주	소유지분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부과예정금액(원)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961-1 601호(좌)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1	주거, 601호 베란다(좌)	판넬/판넬	2.4	147,400	김윤모	02-2670-3683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영 등 포 구 청 장

주무관 김혜미 주무관 신지형 주택과장 이은실 2026. 8. 3.

협조자

시행 주택과-20911 (2026. 8. 3.) 접수

우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당산동3가) / www.ydp.go.kr

전화번호 02-2670-3680 팩스번호 02-2670-3614 / yam1004@ydp.go.kr / 비공개(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수신자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7">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6">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7">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 축조</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7">무허가 건축물 축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예정 금액: 147,400 원)</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7">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영등포구청</td><td>부서명</td><td>주택과</td><td>담당자</td><td>김윤모</td></tr>
<tr><td>주소</td><td colspan="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td><td>전화번호</td><td>02-2670-3683</td></tr>
<tr><td>전자우편 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02)2670-3614</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4">2026년 8월 18일(화)까지</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영 등 포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08050503_0000081_01_05

4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5층 주택과

영등포구청 주택과

07260

반 송
불 요

1101912358922

[접수국 : 서울영등포]
2026년 08월 05일 제작

A1 135 09 16
동서울 서울강남

보통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귀하
06152

우정사업본부 e-그린우편
ePOST.kr 우체국 콜센터 : 1588-1300

내용문과 주소록을 파일로 신청하면 우편물제작과 배달을 한번에 O.K!
봉투식, 메일머지(청구서, 지로), DM동봉, 특수취급우편 등의 편리한
우편 제작 서비스입니다.